

三、美匠特許는 일본에 登錄된 원장에 해당하도록
與合

四、特許期間은 일본特許法에 의하여 일본의 특허로
는登錄이滿되었을 때에同时也是同一九四五年九月
九日以前에 일본特許의期間이延장되었을 때는其特許로 第二百五十九條 第二百五十六條規定에 의한登錄에
서左記事項을滿할 때를

一、第四百五十九條에規定된登錄일로부터 일본의原特許
는登錄일로부터及登錄일로부터는其登錄
에最初에登錄된 자는登錄일로부터는其登錄
書面

二、登廟時特許登錄일로부터는登錄일로부터는登錄
는全一百五十年, 義理上는登錄일로부터는登錄
讀料

三、第二百四十五條第一項에 의하여 原日本登錄의
登廟時特許登錄일로부터는登錄일로부터는登錄
는全一百五十年, 義理上는登錄일로부터는登錄
書面

四、明細書及圖面과 같이出願의基礎가 되는意匠登
錄實用新案登錄는 日本特許의 認證일로부터는登錄
五、出願斗基健가 되는 日本의 特許로는登錄에關한

六、出願者가前號의 原特許에 表示된 所有者와 相違
는 때는 其所有者로 하여 證書其他出願者와
利害說明한 證書를

前項第四號及第五號에規定된 證書를 提出하는 대身
부여其書類를 取寄하도록 局長에게請求할 수 있음
부

第二百五十九條 第二百五十六條規定에 의하여 特許
登錄日부터起算하여 第二百四三條第一項의 特許로는
登錄일로부터起算하여 第二百四三條第一項의 特許로는
表에 依함。 但 我國特許가 與 되기前年度의 特許

는納付함을 不요함。 但 我國特許의基礎가 되는 日本
特許의期間이延장되었을 때는其特許로 第二百五十九
條에 許與한 許可를 提出할 때는其特許는 我國에
는登錄이滿되었을 때에同时也是同一九四五年九月
九日以前에 일본特許의期間이延장되었을 때는其特許로

度特許료는 金三千五百圓으로 하여 其特許는 我國에
서特許料를納付된 特許는 金三千五百圓으로 하여 其特許는 我國에
는登錄이满되었을 때에同时也是同一九四五年九月
九日以前에 일본特許의期間이延장되었을 때는其特許로

는登錄이满되었을 때에同时也是同一九四五年九月
九日以前에 일본特許의期間이延장되었을 때는其特許로

는登錄이满되었을 때에同时也是同一九四五年九月
九日以前에 일본特許의期間이延장되었을 때는其特許로

는登錄이满되었을 때에同时也是同一九四五年九月
九日以前에 일본特許의기간이延장되었을 때는其特許로

내에 提出되있을 때는其登錄일로부터는登錄일로부터는登錄
의 時를 謂함

四、第九十八條에 「特許登額이 提出될 때는其登額은
서特許料를納付된 特許는 金三千五百圓으로 하여 其特許는 我國에
는登錄이满되었을 때에同时也是同一九四五年九月
九日以前에 일본特許의기간이延장되었을 때는其特許로

續·古資料시리즈(15)

特許權存續期間의 연장期間에對한特許料는 每年而納함을 要함

但其延長된最初三年度의特許料는 연장된特許料를 가진 후四十日內지猶豫

장의許可知是特許權者가 받은 후四十日內지猶豫할수 있음

한수 있음

第二百四十五條 第二百四十三條第一項에依하여最

初의三年間의特許料를 納付한發明者, 考案主는 其相續人이其特許金을 納付한資力이 있는境遇에는 局長은 二년의猶豫期間을 許與 할수 있으므로此를 説免할수 있음

猶豫期間이許與되거나 納付其特許料를 納付한發明者, 考案主는 其相續人이其特許金을 納付한資力이 있는境遇에는 局長은 二년의猶豫期間을 許與 할수 있으므로此를 説免할수 있음

猶豫期間이許與되거나 納付其特許料를 納付한發明者, 考案主는 其相續人이其特許金을 納付한資力이 있는境遇에는 局長은 二년의猶豫期間을 許與 할수 있으므로此를 説免할수 있음

第二百四十六條 特許에關하여登錄한權利가有한者

王는 其出願或은特許의 利害關係者는 特許料를 納付義務者의 代身으로 此를 納付할수 있음

第二百四十七條 既納의特許料는 此를 還付하지 않아야 함

第二百四十八條 特許權者王는 特許에關하여登錄한

權利者가有한者或은利害關係者는 特許料를 納付의期

限經過後라도 六月以内에 其特許料를 追納할수 있음

此境遇에는 第二百四十三條第一項의規定에依한特

許料의倍額을 特許料의 納付를 要함

前項의規定에依한期間內에 特許料를 納付하지 않을 때

는 其特許權은 特許料의 納付를 期間經過時に 過及하니消滅되었으므로看做함

第二百四十九條契約上義務가 있는限其特許料를 納付할수 있음

持한特許權者는 特許料를 納付를 要함

第二百五十條 本法及本法에依한規則에依하여特許局에 出願하는其他手續을 하는者는 大統領令으로定하는特許料를 納付함을 要함

第二百五十一條 特許局事務에關한手數料及特許局

에서 販賣하는刊行物의 대금을 商務部長의 認可에 依

하여 局長이 資費를 基準하여 規定함

局長은 前項規定에依하여 國而 調整書類와 作成하는

證寫料特許局圖書館其他施設의 使用料를 規定함

局長은 前項規定에依하여 國而 調整書類와 作成하는

條乃至第二十五條及第二十八條에依하여發生할
경우에關하여는 保護頸의 提出日附三因의 利益을
得함
一九四六年一月二十八日南嶺縣府에 提出된
保護頸에 請求한 局長은 費用新案要旨登錄出頸은 一九
四六年一月二十八日附三特許局에 提出된 保護頸을
三看做함
特許出頸의 明細書及國面에記載된 考案이
增減者 但其新料金은 其發布日부터 六月經過後에
效力이發生함 但其特許料가 其命令發布前에 前納
된 경우에는 其料金當時의 比率로 算定함 但其新料金
에關한命令의 效力이發生한以後의 特許는 新比率
으로 算定함
三納付를 要함
第一項에關하여는 其所要金額은 各稅務署에 納付하여 其領收證을
受取함 領收證의 款本을 其書類에 貼付함 局長
은料金이 納付된 시기로 關係書類에 此를 記入함
에 此를 消印함
二、其所要金額은 各稅務署에 納付하여 其領收證을
受取함 領收證의 款本을 其書類에 貼付함 局長
은料金이 納付된 시기로 關係書類에 此를 記入함
二、其日本斗特許王는 登錄은 左記各一에 該當하야
하나異議申立手續을 하지 않고 特許는 許與함
二、出願者는 其出願當時不效의 지급은 日本斗特許
權者實用新案權者 또는 意匠權者임을 要함
二、其日本斗特許王는 登錄은 左記各一에 該當하야
하나異議申立手續을 하지 않고 特許는 許與함
(가) 日本法에依하여 一九四一年十二月七일
時有效하였거나 納付한 一九二一年四月三十일
法律第五十六號日本特許法第六十九條第一項
規定에依하여 其料金을 追納하였으면 其當事有
效으로 留수하는 것
(나) 一九四一年十二月七일以後 一九四五年九
月九일까지에 日本斗特許局에 登錄된 것
三、出願者가 第三十九條規定에依하여 我國에서 特
許權을享有할수 있음을 要함
一、發明特許는 日本의 特許에該當하므로 許與함
二、實用特許는 日本에 登錄된 補用新案에該當하므로
는 許與함
二、實際上出願을 提出한 日附保持하여 第二十三

特許法(法令 第92號)

(改正 檄紀 4285年 4月 13日)
法律 第238號

이 資料는 古本과 舊官報에서複製하여 原型대로 掲載하므로
페이지의 順序가 거꾸로 되었음을 謝하면서 錯誤 없기 바람.

第二百三十七條 第八條規定及特許局規則에 의하여
我國特許局에서 特許事務을 取扱할 資格이 없는者が
辦理士라는 名稱을 自己自身 使用하는他人이 自己에
關하여 使用할을 承諾하고 王을 直接間接特許局에對

計여 特許出願者其他事業에從事하는者는代理權
限이 있듯이 表示하는 2年以下의 罰役 또는 7만 5
千圓以下의罰金에處함
前項規定은 第九條規定에 依하여辦理士의資格을 制
한王는 除名된者로서 其資格을 回復치 못한者에게 此
是適用함
第二百三十八條 局長의認可없이 國內에서發明 또는
考案을 發明、考案에 關하여 外國에 特許出願王는 賃
用新案、產業的美匠王는 模型의登錄出願을 提出한
出願者其他提出자로는 其提出에 助力한者로서
右記各號의 一에該屬於는 5年以下의 罰役 또는 5
十萬圓以下의罰金에處함
一、武關이 罰金中減輕然其犯有過失
二、出願者其體의 者外國發明王는 考案에關하여
往來國特許局에 서種類發明合令이 있겠고 其命金
이失敗되자 많았을을 아는 境遇出願者其他이자가
其發明王는 考案을 自己自身 公表하거나 또는他人
이公表함을 助力한者는 5年以下의 罰役 또는 50
萬圓以下의罰金에處함

第二百三十九條 本法에서適用하는 民事訴訟法第二
百六十七條第二項及第三百三十六條規定에 依하여
宣誓者가 廉潔의 誓述을 한 境遇에는 1萬圓以下의
罰金에處함
前項의 誓述를犯한者가事件의查定 또는審決前에 自白
한時는 其刑罰을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음

第二百三十六條 特許局職員、前職員 또는 第六十三
條或은第六十四條規定에 依하여 派遣된王는 以前에
法遵되었던者로서 職務上知得한 特許出願者の秘密
王는 特許出願中의發明 or은 考案을 正當한理由 없이
漏泄王는 竊用한者는 2年以上의 罰役 또는 10만 5千

원과 殲滅에處함
前項의 誓述를犯한者가事件의查定 또는審決前에 自白
한時는 其刑罰을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음

第二百四十條 特許局으로부터 誓人、證定人王는 通
事로서 呼出된者가 正當한理由 없이 呼出에 阻止하지 않
으려는 其義務를履行하지 詛述을 한 境遇에는 2萬圓以下의
罰金에處함
前項의 誓述를犯한者가事件의查定 또는審決前에 自白
한時는 其刑罰을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음

第二百四十一條 特許局으로부터書類其他物件의
出王는 提示의命令를 받은者가 正當한理由 없이 其에
의過失에處함

第二百四十二條 非該事件手續法第二百六條乃至第
二百八條의規定은 前三條의過失에適用함
第二百四十三條 特許가附與되며 大致額合으로定함
는特料를納付함을 要함特料는 第八十七條及第
八十八條에 依하여 有效한 年數 每年 特許權者가 此를
부여하는 算算함
第三十一條 特許에 依하여正當한出願者에게 許與
는特許는 此를原特許로看做하여其特許券는 其許與日
부여하는 算算함
再發行特許는 原特許券의繼續으로看做하여原特許
는既往의 再發行特許에對하여納付한 모든 特許券
는 退後의 再發行特許에對하여納付한 것으로此를充
當함
同一特許券는 既往의 再發行特許에關하여數圓의
再發行特許가 있자 墓遇에는 其特許券은 原特許券을
充當함에 關하여原特許券의繼續으로看做된 再發行
特許券을指定함을 要함 再發行特許에는 第一項의 特
許券에 關하여原特許券을原特許券日부起算하여納付함
을 要함 但原特許券의繼續으로指定되자 않는 再發
行特許에 있어서는 再發行特許가 計與되거나 前의 特許
券을納付함을 要함
前項規定은 政府王는 道가 里洞所有者로 且特許에
의對하여는 此를適用하지 않음
第二百四十四條 前條第一項에 依한 第一年乃至第二
年의 特許券은 特許券과 計與되거나 前에完納하여 第四年
及其以後의 特許券은 每年前納함을 要함 但數年分
의料金을 前納함은 無妨함
原特許에對하여 計與되거나 前에完納한 最初三年
間에 封한料金에 包括함

廉潔의 墓遇는 2萬圓以下의過失에適用함
第二百四十二條 非該事件手續法第二百六條乃至第
二百八條의規定은 前三條의過失에適用함
第二百四十三條 特許가附與되며 大致額合으로定함
는特料를納付함을 要함特料는 第八十七條及第
八十八條에 依하여 有效한 年數 每年 特許權者가 此를
부여하는 算算함
第三十一條 特許에 依하여正當한出願者에게 許與
는特許는 此를Original特許로看做하여其特許券는 其許與日
부여하는 算算함
再發行特許는 原特許券의繼續으로看做하여原特許
는既往의 再發行特許에對하여納付한 모든 特許券
는 退後의 再發行特許에對하여納付한 것으로此를充
當함
同一特許券는 既往의 再發行特許에關하여數圓의
再發行特許가 있자 墓遇에는 其特許券은 原特許券을
充當함에 關하여Original特許券의繼續으로看做된 再發行
特許券을指定함을 要함 再發行特许에는 第一項의 特
許券에 關하여Original特許券을Original特許券日부起算하여納付함
을 要함 但Original特許券의繼續으로指定되자 않는 再發
行特许에 있어서는 再發行特许가 計與되거나 前의 特許
券을納付함을 要함
前項規定은 政府王는 道가 里洞所有者로 且特許에
의對하여는 此를適用하지 않음
第二百四十四條 前條第一項에 依한 第一年乃至第二
年의 特許券은 特許券과 計與되거나 前에完納하여 第四年
及其以後의 特許券은 每年前納함을 要함 但數年分
의料金을 前納함은 無妨함
原特許에對하여 計與되거나 前에完納한 最初三年
間에 封한料金에 包括함